

1997회계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검토의견>

1. 세입부문

○'97회계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액은 87억 9,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3억 2,800만원이며, 실세수납액은 49억 7,100만원, 미수납액은 3억 5,700만원으로 6.7%에 해당됨.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액 대비 60.6%로 저조한 것은 주차장 사용료와 골재판매 수입이 부진한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미수납액사유는 개화지구 농작물경작을 위한 하천점용료 2억 8,000만원이 대부분으로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음.

2. 세출부문

가. 총괄

○'97회계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의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97년도 당초예산액 421억 8,1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4억 7,70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5,400만원, 이용액 3억 3,3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6.8%가 증가한 450억 4,500만원으로 결산됨.

○예산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9.2%에 해당하는 401억 8,100만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2.3%인 10억 3,000만원, 불용액은 8.5%인 38억 3,500만원으로 결산됨.

○'97회계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세출결산에서 당해년도 사업성과를 예산투입과 관련시켜 분석해 볼 때 사업성과는 89.2%를 달성했으며 나머지 10.8%는 다음년도 이월사업 또는 예산집행잔액 등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당초계획사업에 집행되지 못하였음.

다음년도 이월액 비율이 낮은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불용액이 8.5%에 이르는 것과 불용액중 예산집행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88.8%를 차지한 것은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과 소요예산 산출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됨.

나.항목별 결산

□ 불용액

○'97회계년도 결산에서 불용액은 38억

3,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에 이르고 있으며, 그 내용은 집행사유미발생 1,100만원, 예산절감 3억 7,600만원, 예산집행잔액 34억 600만원, 예비비 4,200만원임.

○이와 같이 불용액이 예산현액대비 8.5%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불용액중 대부분(88.8%)이 예산집행 잔액인 것으로 볼 때 예산편성 및 예비심사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이용

○'97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액은 3억 3,300만원으로 이용사유는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기관·부서간 정원의 변동으로 인건비성 경비의 과부족이 발생되어 집행잔액 발생부서예산을 부족액 발생부서로 이용 증당됨.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예산과목이 세항 또는 목에 해당되는 행정과목간 상호용통으로 보아 예산전용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이용으로 승인한 것은 예산집행의 신속성을 저해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다음년도 이월액

○'97회계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에서 다음년도 이월액은 10억 3,0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22.9%에 해당되며, 그 내용으로는 사고이월이 전부임. 사고이월 사유는 준공검수기간 확보를 위해 관공선 선착장 바지 3개소 제작설치비 및 책임감리용역비 2억 9,900만원과 서울시 감사결과에 따른 오니토 현장밀도 재확인 등 절차기간 소요로 인한 오니토 제거공사비 및 책임감리용역비 7억 3,1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됨.

3. 예비비 지출

○'97회계년연도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예비비는총 2건 5,400만원으로 복리후생비 성격의 체력단련비 부족분 3,900만원과 연가보상비 부족분 1,500만원이며, 예비비 지출결정액 5,4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지출하고 3,9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이는 체력단련비 부족분을 동일 세목에서 조정하여 증당하였으므로 전액 불용 처리한 것임.

IV. 결산검사 주요지적사항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하면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97회계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결산검사결과 2건이 지적되어 시정권고 조치가 있었음.

'97회계년도 결산검사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지적사항(2건)

연번	제 목	시 정 권 고	조 치 결 과	비고
40	한강시민이용시설물의 운영주체선정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의 내용으로 볼 때, 위탁계약을 하여야만 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주차장을 포함한 모든 시설에 대하여 관계법률에 따라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운영자를 선임토록 하고, ○ 위탁운영은 손익에 대한 Risk를 운영자가 지도록 하여야지 남으면 내 것이고, 모자라면 시민이 부담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 특히, 계약을 위배하여 운영비를 보조하고 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까지 보조하여 주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시민공원내 수영장 위탁계약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한강공원이용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위탁운영) 규정에서의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 규정으로는 일반공개경쟁입찰 등에 의한 영리단체가 운영할 수 없음. - 그러나 향후 한강이용시설물 설치목적 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 운영단체에게 170백만원의 보조금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2 감사원 감사시 수입에 비해 지출이 과다한(운영손실:2,041백만원) 사유가 수영장내에서 운영하는 매점, 체육용품 대여 등이 위탁단체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므로 적자가 누적된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이 운영하던 유료보관함, 롤러·빙상스케이트, 수영용품 등을 통합운영하기 위한 우리 시에서 구입한 수영장 부대시설 인수비용임. ※ 수영장 위탁시설은 수영장시설과 모든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대상으로 함.(위탁약정서 제2조) ○ 안전점검비 31백만원의 시에서 부담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화된 수영장 시설물 전반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용역비로, 위탁약정서상 기본적 시설의 유지보수 및 대수선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는 조항에 의거 부담하게 되었음.(위탁약정서 제3조) 	

연 번	세 목	시 정 권 고	조 치 결 과	비 고
41	한강거북선 실지장소 이전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 거북선의 유지관 리비를 최소화하는 방 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 남해바다 고향을 떠나 온 거북선이 한강이라 하여 만족할리 없을 것이고, 또 어차피 운 항목적이 아닌 전시용 이라면 일반인의 접근 이 제한적인 한강변 이촌지구로 고정시킬 필요가 없이 다른 전 시물과 함께 전시함으 로써 추가관리인이 필 요치 않은 전쟁기념관 등 육상의 타처로 옮 기는 방안의 검토를 권고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거북선은 '96년부터 청소년 훈련, 교육전문단체인 한국청소년연맹에서 관 리인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관리비 용 절감을 위하여 '99년에는 2명을 감축 한 8명으로 운영 유지관리 비용을 최대 한으로 절감할 계획이며, ○ 거북선의 다른 장소 이동은 '95년 4월 전쟁기념사업회에 문의한바, 전쟁기념관 전시 불가능 통보 '95년 10월 경남 남해군청으로부터 무상 대여 인수 의사가 있었으나, 시민의 반 대여론과 이동 어려움으로 무산되었음. ○ 현재 거북선이 위치하고 있는 이촌지구는 청소년광장, 자연학습장, 수상훈련장, 수영장, 롤러스케이트장 등 청소년의 건 전한 여가선용의 장소로 조성되어 있어 거북선과 연계 운영에 따른 시너지효과 기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 감사의 목적 및 근거

목 적

-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시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9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운영의 합법성,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고,
- 불합리한 사항을 적출·시정함으로써 자 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및 집행기관 감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행정 의 능률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36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의2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 례 제2조~제6조

2. 감사기간

○1998. 11. 21(토) ~ 11. 30(월)[10 일간]

(다음 페이지에 계속)